

# 대법원 2018도1230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괴산군수인 피고인 나용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나용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 1230 판결)

###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 공소사실

##### ●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은 현직 괴산군수임. 2017. 4. 12. 실시된 괴산군 보궐선거에서 괴산군수로 당선되었음
- 2016. 11. 25. 전직 괴산군수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위가 상실되었음. 이에 피고인은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었음

##### ● 기부행위 금지 위반

- 피고인은 2016. 12. 14. 07:50경 구례·여수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대원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내려온 다음, 부근에 있던 위 연합대 여성국장에게 “선진지 갈 때 같이 계신 분들 커피 사먹으라” 고 말하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음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2017. 3. 하순 관할 선관위가 피고인의 찬조금 지급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음. 지역 언론이 2017. 3. 30. ‘괴산군수 후보 금품제공설 파장’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함
  - 선관위가 무소속 유력 후보 A씨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져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유권자 B씨에게 20~3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 B씨는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북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A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피고인은 2017. 3. 31. 괴산군청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찬조금 2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내가 유권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다. 지난 해 12월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그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20만 원을 건넸고, 올해 2월 중순께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것이고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허위임.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방범연합대에 찬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전부 유죄(벌금 150만 원)

● 원심: 항소기각 → 피고인 상고

-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함

-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단순한 대여행위를 한 것인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이나 준법 정신 등 성품과 관련된 것이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함

## 2. 대법원의 판단

### ▣ 쟁점

-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로 볼 수 있는지
- 피고인이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은 처벌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의 개별 조항에 대하여 위헌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어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음. 다만 피고인은 동일한 사유로 별도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본건 선고일과 동일자로 기각됨

### ▣ 판결 결과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 ▣ 판단 이유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함

## 3. 판결의 의의

-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